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이 안내문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요약본으로 사업의 세부사항은 반드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청년을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2018년 연평균 (2019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제외 사업장: 국가·지자체·공공기관·정부출연·출자기관 등, 임금체불사업장, 부동산업·사행산업·유흥업 등 일부업종, 인건비 정부재정지원 기업 등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 일부업종은 5인 미만(1인 이상)도 가능

☞ 성장유망업종 확인: 서초고용센터 홈페이지(정보마당→서식자료실→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침 확인)

※ 기업 규모 판단 사항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 참고요망(세부사항 확인 필요)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시행지침을 숙지바랍니다.

□ 주요 지원요건(기업요건 + 청년요건) 기업 요건을 우선 충족 후 신규채용 청년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업 요건) * 기업요건 충족을 위해 신규 채용한 청년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I. 기업 규모(기준 피보험자수)에 따라 청년(만15세 ~ 34세*)을 최저고용인원 수 이상 정규직 신규채용

* 군필자인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연령 만 39세까지)

○ 기업규모(기준 피보험자수*) 판단 기준 * 기준 피보험자수: 청년 '추가' 채용의 판단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수

1) 기존 기업

- 2018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기업규모 판단하되, 2018년 중 고용보험 신규성립기업은 신규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2018년 말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로 기업규모 판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버림(예시: 연평균 8.6명 → 8명으로 인정)

2) 2019년 신규성립 기업

- 2019년 중 고용보험 신규성립기업은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기업규모 판단

3) 위 1), 2) 기준으로 기업규모 판단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미만)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018년도 말일 기준 또는 2019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 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기업규모 판단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II. 기준 피보험자수 대비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예시1> 2018년 연평균 피보험자가 4명인 기업이 2018.12.1.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2018.12월말 피보험자수 5인(기업요건 충족)이 되어, 2019.2월 청년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하여 6명 이상으로 기업 피보험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추가채용 1명에 대해 지원가능

<예시2> 20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4명인 기업에서, 2019.2월에 청년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2019.2월말 피보험자수 5인(기업요건 충족)이 된 후 2019.3월 이후에 청년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하여 기업 피보험자수를 6명으로 증가시킨 경우 추가채용 1명에 대해 지원가능

III. 지원기간 시작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함

① 전체 피보험자수는 '기준 피보험자수'와 '청년 신규채용인원'을 합한 수로 하고, 각 장려금 지급구간마다 유지해야 함.

② 전체 피보험자수 유지 충족여부는, 지원기간 시작이후 매 1개월 단위 구간의 월말 피보험자 수로 판단함.

IV. 청년을 채용하여 장려금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내에 지원신청한 경우에 한정함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만 6개월이 아닌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달력으로 6개월로 봄.

<예시> ○○기업에서 '19.2.15. 채용한 A청년을 '19.2월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되는 시점(7월 말)부터 3개월인 '19.10.31.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규채용 청년요건)

- I. '19.1.1.~'19.12.31에 만 15~34세 이하 연령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 3개월 이내 기간제 등으로 채용 후, 동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 ⇨ 최소고용유지기간 기산점은 정규직 전환일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수습시용기간(이 경우에도 수습시용기간은 3개월로 국한)을 정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수습시용기간이 종료한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
 - ▶ 2018년도 신규채용자 지원 제외. (2019년 채용자부터 지원 가능)

II. 신규채용된 청년은 청년의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최소 고용유지기간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역월로 계산)

* 신규채용 청년의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최소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시) ○○기업에서 2019.2.15 채용한 청년은 채용한 달(2월)을 포함하여 월 단위로 역산하여 2019.7.31.까지 근무 하였다면,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충족 된 것임

※ 사업장에서 19.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설정하여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신규채용 청년의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이 지난 후에 지원금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금의 지원은 수습시용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지원
⇨ 최소고용유지기간 기산점은 채용일, 지원금 시작은 수습시용기간 종료일 이후

III. 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에서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나, 채용월로부터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내에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시)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였으나 기존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기업 전체의 근로자가 채용월로부터 6개월 이내 증가하지 않는다면, 신규 채용한 청년은 추가고용이 아닌 퇴사한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채용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IV.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만 6개월이 아닌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달력으로 6개월로 봄.

※ 지원대상 청년을 신규 채용한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V. 신규채용 청년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VI.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1,745,150원(주40시간 월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함

VII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나월 임금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수준 및 한도: 기업 당 최대 **30명**(기존참여 사업장은 19.4월 말 이전까지 지원받은 인원 중 가장 큰 달의 인원을 한도로 함)

I. 지원한도

- ① 기업 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 ② 다만, 2019년 신규 성립기업의 기업규모(기준 피보험자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2019년 중에는 아래 한도까지 지원
 - * 동 기업에 대해서는 차 년도에 기준 피보험자수를 연평균으로 재산정하여 요건 충족 시 지원

기업규모	지원한도
1~4인	3인
5~9인	6인

II. 지원수준: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함

< 지원 예시 >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5명 고용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4,500만원
30~99인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100인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 * 30인 미만 사업장 1명부터 지원/30~99인 사업장 2번째 청년부터 지원/100인 이상 사업장 3번째 채용된 청년부터 지원

- [예시1] '18년 연평균 기준 전체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이 청년을 3명 채용한 경우 3명분 인건비 지원 가능
- [예시2] '18년 연평균 기준 전체피보험자수가 50명인 기업이 청년을 3명 채용한 경우 2명분(2번째) 인건비 지원 가능
- [예시3] '18년 연평균 기준 전체피보험자수가 120명인 기업이 청년을 3명 채용한 경우 1명분(3번째) 인건비 지원 가능

III.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1,745,150원 이상인 경우, “지원인원 × 월 75만원”을 지원

- * 지원인원은 매월 말 기준으로 판단
- * 다만,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채용된 경우 또는 근로자의 결근 등 사정으로 근로일수가 적어 해당 해당월에 지급받은 임금이 1,745,1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액(75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IV.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130만원 이상 1,745,15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을 지원함

□ 기타

○ 지원제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 채용 당시 실업자가 아닌 자(재학생, 휴학생,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
- 1년 이내 동일(또는 관련) 기업 재입사 근로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 근로자
- 월 임금 130만원 미만 근로자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중복지원 제한

- 고용보험법 및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 등을 받는 사업장. 다만, 청년내일 채용공제 참여자 및 일자리안정자금(19년) 중복지원 가능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 및 제79조 참조
-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지급제한, 추가징수

□ 신청방법

○ 시기: 3개월 단위 신청

□ 원칙적으로 3개월 단위 신청(3개월 이상 최대 9개월 단위 신청 가능)

□ 다만 최초 지원대상 신규채용 청년의 경우, 사업주는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경과 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지방관서에서는 6개월 단위로 지원함

□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동 장려금을 6개월 분 이상 신청분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함

예 시 ●●●●●●●●

2019.1.15. 신규채용한 A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동 청년은 2019.1월부터 6월 까지 최소고용유지기간동안 재직하여야 하고, 기업은 동 청년을 대상으로 1~6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6개월 임금을 지급 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고용센터에 **6개월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방법: 서초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 서류: 지원금신청서*, 장려금대상자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급여 이체증), 사업주 확인서* 등(* 아래서식 첨부)

※ 임금기산일이 초일에서 말일일 경우 해당 월 임금대장필요

임금기산일이 예를 들어 당월 25일~익월 24일인 경우 해당 월 임금대장과 다음 달 임금대장 둘 다 필요

□ 문의처

○ 서초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관할별 담당자 연락처 확인 후 문의바랍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지사사업장 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여부	☐ 해당 ☐ 비해당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여부	☐ 해당 ☐ 비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여부	☐ 해당 ☐ 비해당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직전 보합연도 연평균 기준 (‘19년도 신규사업장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등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	장려금 지원요건 최초 종족일 (최초 신청시만 기재)						
(명)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년 월 일
	해당 월말 전체 피보험자수							
	기존 지원인원							
	신청인원 (지원대상 청년수)							

3. 신청 내용: 신청대상 근로자에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이내의 혈족인척 포함여부 (☐ 해당 ☐ 비해당)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현황 () 명				
연번	해당연월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전환)일 (년 월 일)	월 임금총액(원) (세전기준)
1				
2				
3				
4				
5				
장려금 신청인원 () 명, 신청금액 ()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첨부서류	1.월별임금대장 2.임금지급증빙서류 3.근로계약서 4.통장사본 5.사업주 확인서 등 입증서류
------	---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 장려금 지원을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대상자	내용 기재 必		
1. 청년 대상자	성명:		
2. 채용일(정규직 전환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기간이 있는지 여부 및 기간	☐ 예 (수습, 시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아니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20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2019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달의 말일 기준) 대비 기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하였습니다.			
2. 우선지원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됩니다.			
3.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4. 신청대상 근로자의 채용 전 1년 이내 관련사업주가 아닙니다. ※ 지침 p9 2-8 참조			
5.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근로자 채용 등 조건으로 금전적 지원(인건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지원 가능)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 제40조의2 참조			지원금명:
☐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중요: 근로계약서 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지 확인 필수			
2. 신청대상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입니다.			
3.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이상이며 월 130만원 이상입니다.			
4.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당시 재학생(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이 아닙니다. ※ 채용시점에 최종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수료)예정일: (년 월 일) * 확인자료 첨부 제출			
6.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당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자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8. 신청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신규채용 전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신청대상 근로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로 등록된 근로자가 아닙니다.			
10.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11. 지원대상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부당하게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 기타			
1. 사업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신청 시 동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2.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를 없음을 확인합니다.			
3. 대상자의 월급 산정 기간을 적어주세요. - 월급 산정 기간: 매월 ()일부터 ()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 익월) ()일에 지급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직인)	근로자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빈칸에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가 먼저 작성 및 서명 후, 근로자가 해당내용이 맞는지 읽어본 후 근로자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요건을 정확하게 읽어본 후 예/아니오에 표기 바랍니다.
4. 본 자료를 잘못 작성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 사업주에게 있으니 정확히 작성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담당자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근로자별로 작성바랍니다.
6. 확인서는 모두 '자필로' 작성바랍니다. (컴퓨터로 작성 불가)